

判例教室

外国事件

引用特許 請求範囲 2의 發明이 訂正審判 結果 削除되기 위해 本件出願에 關係되는 發明이 上記의 發明과 同一發明임으로 本 件出願을 拒絶한 審決이 取消된 例

(東京高裁 59. 12. 13 判決：昭和 58年(行ケ) 161號)

1. 事件의 概要

原告는 本件 特許出願을 그 原出願의 分割出願으로서 出願을 하였던바 本願 發明은 그 原出願의 特許請求範囲 2에 記載된 發明(以下 引用發明이라고 한다)과 同一發明임으로 本件出願에 對해서는 出願의 分割에 의거 出願日의 遷及이 認定되고 本件出願은 特許法 39條1項의 規定에 따라 特許를 받을 수 없다는 理由로서 이것을 拒絶한 審決이 되었다. 至上記 原出願은 本件 審決當時로 하지 않고 特許權의 設定登録이 되어 있었다.

原告는 上記審決의 取消를 求해서 出訴함과 同時に 上記의 原出願에 關係되는 特許(以上 原出願이라 함)에 對해서 特許請求範囲等 2의 記載의 削除를 内容으로 하는 訂正審判을 請求하고 이 訂正審判에 있어서原告의 請求를 認定하는 審決이 되어 이 審決은 이미 確定했다.

2. 判決의 要旨

判決은 下記의 理由에 따라原告의 請求를 認定, 本件出願을 拒絶한 審決을 取消했다. 즉 原出願은 前記 訂正審決의 審決確定에 따라 그

出願의 當初부터 特許請求範囲 2의 記載가 안 된 明細書에 따라 特許出願이 되고 特許權의 設定의 登錄이 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本件 審決은 原出願에 關係되는 發明의 要旨의 認定을 잘못, 그 結果 잘못으로서 本件出願의 先願으로 되지 않는 原出願을 갖고서 本件出願의 先願에 適用된다고 判斷하고 特許法 39條 1項의 規定에 따라 本件出願을 拒絶해야 할 것으로 한 것으로 되돌려보내고 違法으로 있어 上記의 認定 및 判斷의 잘못이 本件 審決의 結論에 影響을 미치게 할 것은 분명하다.

3. 論評

原告가 原出願에 對해서 訂正審判을 請求해서 이 訂正審判이 認定된 것은 本件 審決後로서 있었지만 特許法 第128條의 規定에 따라 訂正을 해야 할 뜻의 審決이 確定된 때에는 訂正後의 경우 明細書 또는 圖面에 따라 特許出願이 되고 또한 特許權의 設定登録에 이를 때 까지의 手續이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引用發明은 本件出願에 對한 先願으로서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本件 審決은 違法의 것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